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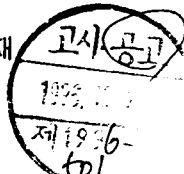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767 / 전송 731-6369
 처리부서 : 도로관리과(시청본관 4층) 담당 하상문

문서번호 도관58710-1048

시행일자 1996.12.23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취급		시 장
보존	년	
국장	전 결	
과장		법무담당관실사필
계장		
기안	하 상 문	협조

1. 건설안전관리본부 교관 58710-1032호('96.12.18)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의 노후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관리
 본부로부터 양화대교 차량통행제한 공고 요청이 있어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1부. 끝.

(제 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 구분 : 공고

나. 게재 건명 : 차량통행제한공고

다. 게재 내용 : 별첨

라.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첨부 차량통행제한공고(안) 2부.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제 3 안)

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
참 조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

1. 도관 58710-1233호('96.12.18)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의 노후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교량 진입로상에 규제표지판을 조속 설치(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4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

1. 도관 58710-1233호('96.12.18)와 관련입니다.
2. 양화대교(구교)의 노후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규제표지판을 조속 설치(정비)하고
4. 단속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동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교통기획과장, 교통운영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총무부장, 교량관리부장),
마포구, 영등포구청(토목과장), 서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6-50/호

차량통행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199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996.12.23 467
 1444
 김재진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설명	양화대교
제한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화대교(구교 : 강북 → 강남) 승용차 외 모든 차량 제한 (3개 차로 운영) ○ 양화대교(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로 : 버스 전용 - 1차로는 강북 → 강남방향 - 4차로는 강남 → 강북방향 · 2,3차로(강남 → 강북방향) -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1.5톤 이상 화물차 제한 · 전 차로 속도 제한 : 40km/시 	구 간	동교량 본선 전 구간 및 진·출입램프
기 간	1997.1.1 00:00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교량 노후화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차량 운행 위험 방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전화 : 731-6766-8)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전화 : 3708-2381-9)		
<위 치 도> 생략			

1996.12.23 467
 김재진